



제 2019-151호

중국

중국, 해적판 영상사이트 운영자에 저작권침해죄로 징역형과 벌금 부과 등 엄벌

북경사무소

■ 현황

- 지난 10월 28일 사오황다페이* 사이트는 “최근 광둥성 광저우시 ‘사오황다페이’ 부처(广东省广州市‘扫黄打非’)가 전국 ‘사오황다페이’ 판공실(全国‘扫黄打非’办公室)과公安부치안관리국(公安部门治安管理局)이 공동으로 해결을 요구한 ‘샤오후TV(小狐TV)’ 저작권 침해사건을 해결했다.”라고 밝힘
- 또한 “피고인 양 모(阳某) 씨는 이미 난샤구인민법원(南沙区人民法院)에서 유기징역 3년에 벌금 1만 위안(한화 약 166만 원)의 형벌을 받았고, 위법소득 134,102.05위안(한화 약 2천 2백만 원)을 몰수당했다”라고 밝힘
- * ‘사오황다페이’란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보호와 해적판 소탕 등을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특별단속으로 그 중점은 불법출판물과 음란물임. 이는 ‘검망행동’과 함께 중국 정부의 대표적인 단속 활동임. 참고로 검망행동은 사오황다페이와 달리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단속이 중심임



■ 주요 내용

- 2018년 9월 광저우시 ‘사오황다페이’ 판공실은 상급부처가 보내온 단서를 바탕으로, ‘샤오후TV’에서 대량의 외국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함. 이에 광저우시 ‘사오황다페이’ 판공실은 문화집법(文化執法), 공안 등 부처와 연합하여 기술적인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증거를 확보함
- 조사결과 2018년 1월부터, 피고 양 모 씨는 광저우시 난샤구에 설립한 광저우 웨이모회사(广州韦某公司)를 ICP(Internet Content Provider) 등록한 후, ‘샤오후TV’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음. 또한,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링크 등의 방식으로 아이치이(爱奇艺), 텐센트 스펀(腾讯视频) 등 타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 영화, 드라마, 애니메이션, 예능 등 총 8,377부를 온라인상에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남

■ 평가

- 중국의 저작권 보호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,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국내외 영상을 불법으로 서비스하는 사이트들이 다수 존재함.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을 볼 수 있는 해적판 사이트도 ‘한국 드라마 TV(韩剧TV) 사이트’ 등 상당수 운영되고 있음. 우리 권리자들도 중국 정부의 검망행동이나 사오황다페이 등 관련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침해 사이트 폐쇄조치 및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대처를 해나갈 필요가 있음

■ 출처

- 오락법내참망 위챗 공중계정(娱乐法内参微信公众号)
 - https://mp.weixin.qq.com/s/x_tGUlywdiSiwsfavCNCHw